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0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유동수 · 박민규 · 강준현
박선원 · 김남근 · 박 정
이강일 · 허종식 · 김현정
이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대상자에 관하여 그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의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 성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수용하여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못 수용하여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함인데,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른 감치나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에 따른 감치는 그 구체적 감치대상자 인계의 절차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음. 그럼에도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감치대상자들로 하여금 그 성명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묵비하여 감치의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법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

대한 문제라 할 것임.

이에 감치대상자가 감치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에는 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되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정질서 수호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감치대상자에 대한 입소 절차) 제16조제1항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의 집행으로 수용되는 신입자(「법원조직법」 제61조제2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감치를 위하여 즉시 구속된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신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문조회 요청 등 신입자의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치대상자 수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치대상자를 수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3(감치대상자에 대한 입 소 절차) 제16조제1항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 또는 「군사법원법」 제68조의 4제1항에 따른 감치의 집행으 로 수용되는 신입자(「법원조 직법」 제61조제2항 또는 「군 사법원법」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감치를 위하여 즉시 구속 된 경우에 한한다)의 성명 또 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용 모 또는 성별 등 신입자를 특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 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문조회 요청 등 신입자의 성명 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u>